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89

발의연월일: 2025. 2. 7.

발 의 자:김태호·조경태·이인선

신성범 · 엄태영 · 박충권

조승환 · 김종양 · 성일종

주호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,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.

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,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.

이에,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50조제3항 전단).

법률 제 호

#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0조제3항 전단 중 "제1항(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)에"를 "제1항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 •	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① •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<u>제1항</u>	③제1항
(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	<u>에</u>
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	
<u>니한 경우를 제외한다)에</u> 규정	
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	
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	
금에,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	
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	
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이 경우 "후보자" 또는 "후보	
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	
포함한다)"는 "경선후보자"로	
본다.	<b>.</b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